

# 서울특별시

훈령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 / 팩스 731-6562

문서번호 법무 11010-*PC6*  
 시행일자 1993. 6. *8*  
 경유 (제 1 안)  
 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	
법 제 개 장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	
기안	박상영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	
			협조

제목 훈령발령

1. 행정11060-787(93. 6. 7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등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훈령안 1부. 끝.

*265*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관  
 참조 : 공보1담당관  
 제목 : 시보게재

1. 별첨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등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.
- 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*265*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장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(제 3 안)

수신 : 행정과장  
 제목 : 훈령발령 통보

1. 행정 11060-787(93. 6. 7)호와 관련임.
2.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등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*265*호 (~~법무~~)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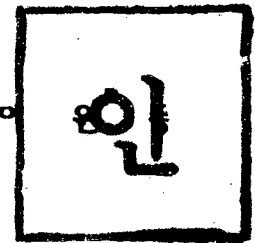
법무 담당관

서울특별시 보통계규정등 시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3년 6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

##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등폐지규정

제 1 조 (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의 폐지)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제 2 조 (서울특별시기관간업무협조규정의 폐지) 서울특별시기관간업무협조규정은  
이를 폐지한다

제 3 조 (서울특별시민간기업체에대한보고업무처리및통제규정의 폐지) 서울특별시  
민간기업체에대한보고업무처리및통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